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고찰

여 경 수*

< 목 차 >

- I. 머리글
- II.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제도
- III.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불복방법
- IV.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경향
- V. 맺음말

I. 머리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부터는 ‘정보공개법’으로 약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지난 1996. 12. 31.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인권임을 헌법재판소는 밝혔다.¹⁾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이다.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

* 충북대학교 시간강사, 법학박사.

1) 헌재 1989.9.4. 88헌마22 결정.

된다. 그 밖에도 알권리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닌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알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²⁾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제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간이·신속·저렴한 불복절차이다. 또한 심사기준에서도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을 가지고도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2편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제도에서는 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여부를 다룬다. 제3편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불복방법에서는 정보공개청구절차와 불복방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다룬다. 제4편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경향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정보 사유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자한다.

2) 현재 2009.9.24. 2007헌바107 결정.

II.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공개청구제도

1. 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

1) 헌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인권이라고 선언하였다.³⁾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이다.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다. 그리하여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그 밖에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도 관련이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알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제도

시민의 알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 알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

3) 헌재 1989.9.4. 88헌마22 결정.

4) 헌재 2004.8.26. 2003헌바81 결정.

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6조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과 행사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⁵⁾

3)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민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⁶⁾ 정보공개제도는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와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서 민주국가를 실현하고자한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국민 간에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기초를 둔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불복절차를 제공한다.

둘째,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한 제도이다. 민주국가에서 국정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둔다. 국민의 의사형성은 올바른 정보를 전제로 하고

5)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9349 판결.

6) 임현·정다운,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6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117면.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의 국정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국민들 앞에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주민자치의 강화를 도모하는 행정체제를 가져온다. 정보공개제도는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적인 관계형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2.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여부

1)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 여부

정보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내용이다.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인권이다.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이라고 한다. 또는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⁷⁾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7) 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결정.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다. 비공개정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을 경우 제도의 해석과 운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공기관, 일반인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권리행사에 관한 분쟁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⁸⁾

2) 기본권제한 정도의 비례성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보공개 의 이익과 비공개 의 이익간의 조정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비공개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제한되는 시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사이에 법익의

8) 표성수,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정보)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제622호, 법조협회, 2008, 40면.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 즉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청된다.⁹⁾ 예들 들면 공인에 대한 공적관심사의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

Ⅲ.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불복방법

1. 정보공개청구 절차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 기재사항은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주소이다. 그리고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과 같은 사항을 작성한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된다.

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된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9) 현재 2010.12.28. 2009헌바258 결정.

하여 운영한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2.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는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2)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간이·신속·저렴한 불복절차이다. 오늘날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쟁송제도의 양대 축을 이룬다. 정보공개법 제19조에서는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정보공개법 제21조에서는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결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불복구제절차 관련

정보공개신청과 관련된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소송 이외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규정하여 불복신청에 관하여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제도의 장점으로는 불복구제절차의 종류를 복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의 선택의 폭을 넓게 인정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불복구제제도 상호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의 확보와 제도의 통일적이고 종합적 구성 및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이의신청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¹⁰⁾

IV.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경향

1.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와 불복방법과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10) 김승태, “정보공개제도 비교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4, 53면.

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¹¹⁾

2) 인용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부터는 ‘중앙행심위’로 약칭) 재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¹²⁾ 이와 같은 취지의 재결로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¹³⁾는 재결이 있다.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¹⁴⁾고 재결하였다. 이 재결의 취지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11)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12) 중앙행심위 2014.1.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3-20698 ; 중앙행심위 2014.7. 15. 중앙행심위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4-5908 ; 중앙행심위 2014.10.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4-18390.

13) 중앙행심위 2013.3.1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2-17076.

14) 중앙행심위 2014.2.1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3-24524.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¹⁵⁾ 고 밝혔다.

3)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와 같이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개청구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¹⁶⁾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 정보공개법 제9조의 의미

정보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의 이익형량의 결과가 정보공개법 제9조로 입법된 것이다.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호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것을 정한 정보,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등 국가적 법익보호 관련의 정보, 제3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관련의 정보, 제4호는 사법 내지 준사법 작용과 관련된 정보,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업무 관련의 정보, 제6호는 개인 사생활 관련의 정보, 제7호는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 제8호는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각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15) 중앙행심위 2014.3.1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3-11893.

16) 중앙행심위 2013.8.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3-6745.

공공기관은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또한 공공기관은 비공개 정보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이는 비공개 사유의 범위를 가능한 축소하고 일반인의 공공기관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부정한 사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상 비공개 정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¹⁷⁾ 이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은 알권리의 제한은 철저히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권 제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 규칙을 적용한 비공개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¹⁸⁾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¹⁹⁾

17) 대법 2006.1.13 선고 2004두12629.

18) 배경근,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한국언론학회」 제53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09, 380면.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부정한 사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위의 재결에 따르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감정서를 열람·등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²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²¹⁾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부정한 사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많은 비공개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만, 관

19) 중앙행정위 2014.12.2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4-10309.

20) 중앙행정위 2014.12.2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4-16199.

21)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건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 조항에서 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다.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안을 공개할 경우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이 쟁점이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²²⁾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들은 당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²³⁾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장비개발발표대회의 각 시·도별 순위에는 각 평가위원의 명단과 채점내역 및 순위산출방식, 다른 참가자들이 획득한 총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대로 전자파일로 전송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했다.²⁴⁾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부정한 사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22)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23) 헌재 2011.3.31. 2010헌바291 결정.

24) 중앙행심위 2013.4.16.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 2013-02230.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이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위한 법조문이다.²⁵⁾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²⁶⁾고 밝혔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정보는 조합원번호, 성명, 자택주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택주소의 경우 숫자로 된 부분이 타인이 식별할 수 없게 기호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²⁷⁾고 중앙행심위는 밝혔다.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부정한 사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25) 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결정.

26) 중앙행심위 2013.9.24.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 2013-5339.

27) 중앙행심위 2014.11.18.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 2014-13372.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²⁸⁾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법인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²⁹⁾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부정한 사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특정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이익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면 「교내의 폐기물 처리현황이 공개되더라도 부동산의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³⁰⁾

28)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29) 중앙행심위 2014.5.2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4-5094.

V. 맺음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으로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정보공개신청과 관련된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소송 이외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규정하여 불복신청에 관하여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간이·신속·저렴한 불복절차이다. 또한 심사기준에서도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을 가지고도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해석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재결을 다수 내렸다.

투고일 : 2015.10.30. / 심사완료일 : 2015.11.23. / 게재확정일 : 2015.12.20.

[참고문헌]

- 김승태, “정보공개제도 비교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지역정보화학 회, 2014.
- 배정근,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한국 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한국언론학회, 2009.
- 임현 · 정다운,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 69집, 한국토지 공법학회, 2015.
- 표성수, “정보공개법 소정의 예외사유(비공개정보)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 제 622호, 법조 협회, 2008.

[국문초록]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고찰

여 경 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1996년 제정되었다. 오늘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로 행정정보공개 제도 들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심판상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정보공개신청과 관련된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소송 이외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규정하여 불복신청에 관하여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간이·신속·저렴한 불복절차이다. 또한 심사기준에서도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을 가지고도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해석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재결을 다수 내렸다.

주제어 :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원칙

* 충북대학교 시간강사, 법학박사.

[Abstract]

A Study 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Yeo, Gyeong-Su*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been legislated in 1996 by to ensure th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o secure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by prescribing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eople's claims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oblig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Among the representative method today for raising credit and communication is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which must be observed and modified constantly for the correct maintenance of relation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Every people hold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for disclosing information made by any foreign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hen any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a decision made by any public i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information disclosure, he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that cas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supervise the decisions of public institutions, other tha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Every applicant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dures for filing administrative appeals. Any member who is involved in administrative appeals of decisions on whether or not to disclose informati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 A lecturer, Department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shall not divulge secrets that the member has learned while performing his duties during his tenure and after his retir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Key words : Right to know,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formation of Non-disclosu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rinciple of information disclosure